

「의화(원화)예금 자동대체서비스 이용약관」 개정대비표

1. 개정시행일 : 2019. 10. 31.

2. 개정내용 : 출금계좌 비밀번호 ARS 인증 시 거래의 전자 녹취 적용
수수료 변경 시 사전 고지 기간 명시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제 5 조 (서비스 처리방법) ① ~ ② (생략) (신설)</p>	<p>제 5 조 (서비스 처리방법) ① ~ ② (현행과 동일) ③ ARS 에 의한 출금계좌 비밀번호 인증 시 은행은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전자 녹취를 시행합니다. 다만,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</p>	<p>ARS 비밀번호 인증절차 시 거래내용의 전자 녹취 적용 신설 내용 반영</p>
<p>제 6 조 (이용수수료) 이용수수료는 은행의 홈페이지에 공시한 서비스 이용수수료를 따르기로 하며 이에 대한 변경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고객에게 그 내용을 통지합니다.</p>	<p>제 6 조 (이용수수료) 이용수수료는 은행의 홈페이지에 공시한 서비스 이용수수료를 따르기로 하며 이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시행일 1개월 전에 한 달간 영업점과 은행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합니다.</p>	<p>수수료 변경 시 사전 고지 기간 명시</p>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 약정서 적용 여부 : 적용